

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8. 23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8. 2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8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과장 성광식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
 - 공유재산인 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의 사회체육관 건립부지 면적 8,421.7㎡(2,552평) 중 1,112.6㎡(337.2평)와 사유재산인 458, 588-4번지의 대우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면적 9,219.3㎡(2,793.7평) 중 1,426.3㎡(432.2평)와 교환하여 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교환대상부지

구 분	위 치	면적(㎡)	교환면적(㎡)	비 고
시 유 지	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	8,421.7	1,112.6	
대우조합	소사구 송내동 458, 588-4번지	9,219.3	1,426.3	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땅을 교환하는데 최종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?	○ 복지환경국장인 제가 했습니다만,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.
○ 땅을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	○ 현재 땅 모양으로는 사회체육관 건립이 부적합하여 부천시에서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교환 결정하였습니다.
○ 대우측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. 부천시에 땅을 더 주면서 교환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?	○ 도시계획상세구역에 포함되어 도시과에서 안을 잡은 데 대하여 동조하였습니다. 또한 우리쪽으로 들어온 땅이 효용가치도 높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의하였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의안번호	제211호
의결년월일	99. 8. 27 (제72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주 문

- 99.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

제안사유

-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
 - 공유재산인 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의 사회체육관 건립부지 면적 8,421.7㎡(2,552평) 중 1,112.6㎡(337.2평)와 사유재산인 458, 588-4번지의 대우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면적 9,219.3㎡(2,793.7평) 중 1,426.3㎡(432.2평)와 교환하여 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

주요내용

-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
 - 현황

구 분	위 치	면적(㎡)	교환면적(㎡)	비 고
시유지	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	8,421.7	1,112.6	
대우조합	소사구 송내동 458, 588-4번지	9,219.3	1,426.3	

99. 공유재산관리계획서

회계명 : 일반회계

9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(단위 : m², 백만원)

구 분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비 고	
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	
취 득	계	토 지 건 물 기 타	5 10	21,031.9 26,143.0	13,821.6 32,310.8	1	1,426.3	1,066.0	6 10	22,458.2 36,291.3	14,887.6 32,310.8	
	1. 매 입	토 지 건 물 기 타	5 10	21,031.9 36,291.3	13,821.6 32,310.8				5 10	21,031.9 36,291.3	13,821.6 32,310.8	
	2. 교환으로 취득	토 지 건 물 기 타				1	1,426.3	1,066.0	1	1,426.3	1,066.0	
	3. 기타 취득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
처 분	계	토 지 건 물 기 타	1 5	4,333.56 1,111.31	2,543.8 603.4	1	1,112.6	806.6	2 5	5,446.16 1,111.31	3,350.4 603.4	
	4. 매 각	토 지 건 물 기 타	1 5	4,333.56 1,111.31	2,543.8 603.4				1 5	4,333.56 1,111.31	2,543.8 603.4	
	5. 양 여	토 지 건 물 기 타										
	6. 교환으로 처분	토 지 건 물 기 타				1	1,112.6	806.6	1	1,112.6	806.6	

99년도 취득교환재산목록(7 - 3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m²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의 표 시				교환대상 수 량	추정가액	교환시기	교환사유	교환대상자	비고	
	구분	지목	소 재 지	일단의 수 량							
1건	처분	대지	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	8,421.7	1,112.6	806,635	99. 9월	부지의 효용가치 극대화	부천시↔ 대우지역 조합아파트		
1건	취득	대지	소사구 송내동 458, 588-4번지	9,219.3	1,426.3	1,066,056					
계	토지	처분	대지	소사구 송내동 457, 588번지	8,421.7	1,112.6	806.6	99. 9월	부지의 효용가치 극대화	부천시↔ 대우지역 조합아파트	
		취득	대지	소사구 송내동 458, 588-4번지	9,219.3	1,426.3	1,066.0				
	건물	처분 취득									
	기타	처분 취득									

공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

